

【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4조2(대출계약 철회) ① 채무자(개인)에 한한다. 이하 같다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(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)로부터 14일(이하 “철회기한”이라 한다)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.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.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(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) <p>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, (근)질권설정계약서 등 해당 대출과 관련된 약정서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.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	<p>제4조2(대출계약 철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3.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</p> <p>④ 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한다.</p> <p>⑤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.</p> <p>⑥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.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⑦ 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철회기한 내에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,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녹취 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.</p>	<p>14일 이내 중도상환시 철회권 추가 설명 근거 마련</p>